

자유무역협정(FTA) 원산지검증, 이것만 기억하세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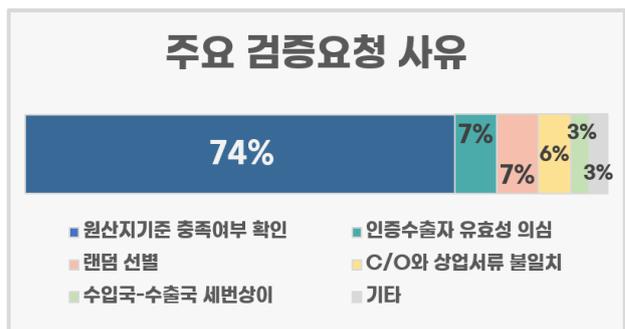
- 관세청, 「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」 배포
- 국내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지원 목적 ... 주요 검증 품목, 위반사례 등 담아
- 관세청 자유무역협정(FTA) 포털(>원산지검증>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)에서 자유롭게 확인

- 관세청은 「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」을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.
 - 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(원산지결정기준, 원산지 증빙서류 등)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, 주로 자유무역협정(FTA)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루어진다.
 - 이번 검증 동향은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유무역협정(FTA) 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.
- 이번 동향에는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▲유형별 위반사례 ▲주요 검증요청 품목 ▲수출 시 유의사항 ▲검증 관련 통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.

❖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주요 위반사례

한-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(FTA) 적용시, 편물 제품은 한국산 실(원사)을 사용하여 편직되어야만 한국산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국내 섬유류 수출업체 A사(社)는 일본산 원사를 이용해 생산된 편물을 수출하며 원산지신고서를 한국산으로 부적정 발행

❖ [24년도 상반기] 상대국 주요 검증요청 사유



- 「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」은 관세청 ‘자유무역협정(FTA) 포털(<https://www.customs.go.kr/ftaportalkor/>)’의 ‘수출물품 주요 검증 동향’ 메뉴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.

< 관세청 FTA 포털 메뉴 화면 >

FTA 일반현황	FTA 활용정보	FTA 활용제도	FTA 기업지원	원산지검증	FTA 자료실	CO-PASS	참여마당
FTA란? +	FTA 활용정보 +	원산지증명서 발급 +	찾아가는 상담센터 +	원산지검증 +	협정별 자료실	CO-PASS 진행정보	FTA 고객상담센터 +
FTA 체결현황 +	FTA 활용률 +	인증수출자 제도 +	컨설팅 사업 +	서류보관 가이드라인 +	협정별 집행지침	국가별 C/O 발급정보	공지사항
FTA 한눈에 보기	FTA 법령/통계정보	협정별 물량관리	YES FTA 전문교육 +	검증사례 +	FTA 서식모음 +	C/O 발급 통계정보 +	주민원담변사례
FTA 협정문	FTA 비즈니스 모델 +	국내제조확인서	공인관세사 제도 +	주요국 FTA 위험동향	협정별 세율정보 +	자사 C/O 발급이력	해외통관애로 신고
FTA 용어집	세율정보	원산지확인서	원산지관리담당자 교육	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	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	CO-PASS 장애신고	관련 사이트 +
RCEP +	원산지결정기준	원산지 사전심사	홍보 영상		FTA 상대국 통관정보		
APTA +	HS 연계표		참고자료		e-Book +		

- 한편, 올해 관세청은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361개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1: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‘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’을 실시하고 있으며,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('25.上 접수예정)이다.
- 또한,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‘자유무역협정(FTA)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’, ‘예스(YES) 자유무역협정(FTA) 전문교육’ 등 자유무역협정(FTA)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.
- 윤주현 원산지검증과장은 “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 수출기업이 전체 수출기업의 80%에 달하는 등 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, 최근 3년 기준으로 수입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기업 중 약 16%에서 수출물품 원산지 관련된 오류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”며,
- “자유무역협정(FTA) 원산지 규정 위반 시 우리 수출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, 상대국 수입자는 협정세율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 주요 오류사례를 숙지하여 주길 바란다”라고 당부했다.

- 이어, “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물품에 대한 최신 원산지검증 동향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,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지속 확장하는 등 직·간접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※ [붙임]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공개자료

담당 부서	국제관세협력국 원산지검증과	책임자	과 장	윤주현	(042-481-3220)
		담당자	사무관	김군수	(042-481-3207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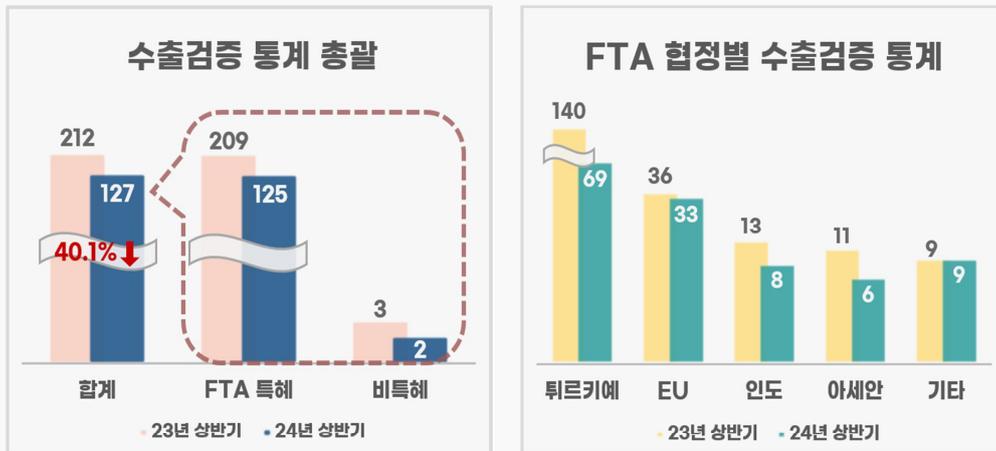
['24년 상반기]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

※ 금번 제공되는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동향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에 검증을 요청하는 건에 한정된 자료이며, 미국·캐나다 등 수입국 관세당국이 직접 우리나라 수출자를 조사하는 협정에 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

I.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

가 전체 검증요청 현황

(단위 : 업체수)



○ **[FTA 특혜 검증]** 국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상대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 대다수인 관계로, 협정상대국의 상황에 따라 그 건수가 유동적입니다. 2024년 상반기 FTA 특혜 검증 요청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 40% 감소하였으며, 이는 튀르키예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요청 건수가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른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○ **[비특혜 검증]** 2024년 상반기, 상대 수입국의 비특혜 원산지검증 요청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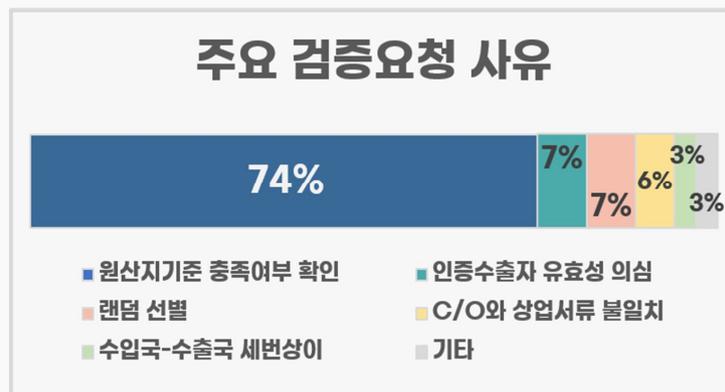
나 협정·유형별 검증요청 현황

(단위 : 업체수)

구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3. 1~6월	'24. 1~6월	전년동기 대비
FTA 특혜 등	튀르키예	543	492	229	198	140	△ 50.7%
	EU	135	50	71	68	36	△ 8.3%
	인도	19	147	30	18	13	△ 38.5%
	아세안	56	14	23	16	11	△ 45.5%
	기타	12	11	10	18	9	-
비특혜	18	16	6	5	3	2	△ 33.3%
합 계	783	730	369	323	212	127	△ 40.1%

- [FTA 특혜 검증] 2024년 상반기 FTA 특혜 검증은 한-튀르키예, 한-EU, 한-인도, 한-아세안 FTA와 관련하여 상대국의 요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
- [비특혜 검증] 2024년 상반기, 비특혜 원산지검증은 모두 EU 및 튀르키예로부터의 요청이었습니다.

다 검증요청 사유



- [검증요청 사유] 2024년 상반기에는 “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”을 이유로 상대국이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.

✓ 각 FTA 협정 특성에 따라 협정별로 원산지검증 요청 사유에 차이가 있으므로, 검증 대응 시 「표.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」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II.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

가 한-튀르키예 FTA

- [현황] 2024년 상반기 기준, 발효된 협정 중 한-튀르키예 FTA에 근거한 수출검증 요청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. (전체 건수 중 약 54% 차지)
- [품목] 섬유류 (편직물) > 기계류 (차량 부품) > 전기기기 (가전제품 등)
- [요청 사유] 튀르키예 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- [주요 위반사례]

□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 발행

- ☞ 한-튀르키예 FTA에 따르면, 편물 제품은 역내산 실(원사)을 사용하여 편직되어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국내 수출업체 A社는 역외산 원사를 이용해 생산된 편물을 수출하며 원산지 신고서를 한국산으로 부적정 발행 →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

○ [튀르키예 수출 시 유의사항]

- ☞ 섬유류 제품에 대한 검증 결과, 원산지결정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, 원산지신고서 발행 전 반드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☞ 최근 튀르키예 당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섬유류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확인되기 전까지 통관을 보류하거나 VAT 과세표준가의 약 45%를 Deposit 으로 요구한다는 동향이 확인되오니, 섬유류 수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☞ 또한, 2024년 6월부터 섬유류 제품에 대한 튀르키예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다시금 급증하는 등 튀르키예로 수출된 대다수의 섬유류 제품에 대해 검증 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검증 대응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나 한-EU FTA

- [현황] 2024년 상반기에는 EU회원국 중 독일, 이탈리아, 슬로베니아로부터의 요청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, 27개 회원국 중 16개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.
- [품목] 섬유류(편직물·의류 등) > 화학공업제품(석유조제품 등) > 플라스틱류(PET 필름 등)
- [요청 사유] EU 각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한국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으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
○ [주요 위반사례]

㉠ 수출자가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발행

- ☞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는 인증을 받은 해당 기업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, 국내 수출업체 B社は FTA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**착오로 자사의 인증번호가 아닌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잘못 기재**

㉡ 원산지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원산지신고서 발행

- ☞ 국내 수출업체 C社は 각종 도소매 업체에서 조달한 제품에 대하여 관련 **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신고서를 한국산으로 부적정하게 발행**

○ [EU 국가 수출 시 유의사항]

- ☞ EU 회원국은 한국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유효 여부를 중점 검증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, 다음 페이지의 「한-EU FTA 원산지신고서 발행 시 유의사항」을 참고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.

「한-EU FTA 원산지신고서 발행 시 유의사항」

**첫째, FTA를 활용해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EU로 수출할 때,
‘품목별 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’ 취득은 필수!**

둘째, ‘인증수출자’ 지위를 취득한 후, 적절한 사후관리는 필수!

(a) 우리 회사의 인증내역은 적정한가?

- ⇒ 인증수출자 지위는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므로,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
- ⇒ 인증은 협정별로 구분되므로, 우리 회사가 한-EU FTA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
- ⇒ 인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부여되므로, 합병·조직분할 등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사유 발생 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로도 적절한 인증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

(b) 품목별 인증수출자 관련, 우리 회사가 EU로 수출하는 품목 전체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는가?

- ⇒ 인증받지 않은 품목(HS 6단위)에 대해서 원산지신고서를 잘못 발행한 것은 아닌지 확인

셋째, 원산지신고서를 협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발행하도록 유의 필요!

(a) 우리 회사가 취득한 인증번호를 원산지신고서에 적정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

- ⇒ 법인등록번호·사업자등록번호·HS 세번 등 무효한 번호를 기재한 것은 아닌지 확인

(b) EU 수입자 또는 제3국 중개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상업서류 양식은 그 내용을 철저히 확인

- ⇒ 우리 회사의 자체 양식이 아닌 상대국 수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상업서류 양식을 사용하여 C/O를 발행하는 경우, 해당 양식에 타업체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



다 한-인도 CEPA

- **[현황]** 2021년도에 급증했던 인도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건수는 2022년 들어 기존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,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.
- **[품목]** 화학공업제품 (화학원료 등) > 전자제품 부품 (휴대폰 부품) > 금속제품 (백금)
- **[요청 사유]** 인도 관세당국은 국내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- **[주요 위반사례]**

□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 발행

- ☞ 국내 수출업체 D社는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포장작업만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이를 인도로 수출하며 한국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 받음

- **[인도 수출 시 유의사항]**

- ☞ 인도 관세당국은 '조합기준' 중 '부가가치기준' 충족 여부 확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,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수출물품의 부가가치 계산 관련 원산지 증빙서류에 대한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라 한-아세안 FTA

- [현황] 2024년 상반기, 아세안 회원국 중 태국·인도네시아·베트남으로부터 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으며, 특히 태국의 검증 요청이 50%를 차지했습니다.
- [품목] 기계류 (사출성형기 부품) > 전기기기 (전선 케이블) · 화학공업제품 (합성수지)
- [요청 사유]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서류(인보이스, 패킹리스트, B/L 등) 간의 내용 불일치 등을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
- 수출물품의 상세 규격명이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서류(패킹리스트) 간에 일부 불일치함 → 검증 요청
- 한-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물품가액을 FOB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C/O에 인보이스상의 EXW 금액이 기재됨 → 검증 요청

- [주요 위반사례] 24년 상반기, 한-아세안 FTA 수출검증 위반사례 없음
- [인도 수출 시 유의사항]
 - ☞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서류 간의 내용 상이를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가장 많으므로,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을 준수하여 기재사항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것이 한-아세안 FTA 수출검증 대응에 가장 중요합니다.



마 기타 FTA

- [현황] 2024년 상반기, 상위 4개 협정 외에 한-영국 FTA, 한-베트남 FTA, 한-중국 FTA와 관련하여 수출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. (전체 중 약 7%)
- [품목] 플라스틱류 (바닥용 매트) · 조제식품 (인삼음료 등) · 기계류 (밸브) 등
- [요청 사유] 한-영국 FTA, 한-베트남 FTA, 한-중국 FTA의 경우,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.
- [주요 위반사례] 24년 상반기, 한-영국·한-베트남·한-중국 FTA 수출검증 관련 위반사례 없음
- [수출 시 유의사항]
 - ☞ 한-영국 FTA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수출검증 요청이 접수된 바 없었으나, 2024년 들어 검증 요청건수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므로, FTA를 활용하여 영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빙자료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바 비특혜 원산지검증

- [현황] 2024년 상반기, 국내 수출물품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검증은 EU 및 튀르키예로부터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.
- [품목] 플라스틱류 (합성수지) · 섬유류 (합성섬유사) 등
- [요청 사유] 수출물품의 한국산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.
- [수출 시 유의사항]
 - ☞ 국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기준보다 상대 수입국의 원산지 기준이 더욱 엄격한 경우가 있으므로, 특히 EU 국가로 수출하면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, 반드시 EU의 원산지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① EU 관세법 위임규칙 부속서 (ANNEX) 22-01_ (PDF 파일 ~ 868 페이지)

<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?uri=CELEX%3A02015R2446-20240311>

② Table of list rules conferring non-preferential origin on products

https://taxation-customs.ec.europa.eu/table-list-rules-conferring-non-preferential-origin-products-following-classification-cn_en

** 링크 ①에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HS 세번은 링크 ②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